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 훈련 등)에 의거 2020년 1학기 상시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정기, 신규)을 온라인 안전교육(코로나19 관련 집체교육 불가)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 육 명 :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2020년 3월 30일 ~ 4월 9일 (수료증 제출 : 4월 10일 15시 기한, 공대 행정실 기계관 111호)
3. 교육방법 : 온라인 안전교육
 - 교육대상 : 상시 연구활동종사자(학부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
 - 교육 시간 : 저위험군 실험실 : 반기별 3시간 이상 수강
고위험군(화공약품, 고압가스 취급) 실험실 : 반기별 6시간 이상 수강

법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실시 • 안전교육 실시자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직접 실시자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서 안전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 연구실책임자 • 대상 및 시간 			
과정	교육 대상		교육 시간
신규교육	비 근로자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정기 교육 (반기별)	고위험군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6시간 이상
	저위험군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3시간 이상
특별 안전교육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연구주체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실에 근무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시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행령 제9조제1항 1.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의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4. 유의사항 :
 - 가. 안전교육 미이수자 및 수료증 미제출자 : 연구실험실 출입통제 강화
 - 나. 기간내 미이수자 : 추가 6시간 교육 실시 예정

5. 수강절차 :
 - 가.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검색 후 접속

<https://edu.labs.go.kr/CreateCourseHome.do?cmd=listCourseMain&courseDTO.crsCtgrCd=CC00000142&courseDTO.crsOperMthd=ON>

- 나. 회원가입(회원가입 시 입력사항)
 - (1) 기관분류 : 대학
 - (2) 소속기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 검색 후 클릭
 - (3) 직급(학년) : 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해당 학년)
 - (4) 회원권한 : 연구활동종사자
 - (5) 부서(학과) : 해당 학부(과) 입력(전공으로 표기하면 안됨)
 - (6) 사번(학번) : 해당 학번 입력

다. 수강신청 → 온라인교육 → 연구실안전교육 → 안전교육 이수시간에 맞는 해당분야 수강(과정소개에 기재되어 있음) → 수강 완료 후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 수료증 연구실험실별로 취합 후 공과대학 행정실로 제출

※ 문의 : 공과대학 행정실(기계관 111호, 내선 : 019)